

## 창업하면 고성스쿨!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
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‘창업하면 고성스쿨!’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고성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 창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5. .

고성군수

### 1. 모집 개요

- 모집기간: 2024. 5. 3.(금) 09:00 ~ 5. 13.(월) 18:00
- 모집인원: 예비 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 1명
- 신청자격
  - ① (연 령) 2024. 1. 1. 기준 18~45세 이하(1978. 1. 2.~2006. 1. 1. 출생자) 청년
  - ② (거주지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상남도 고성군인 자
    - ※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선정된 때부터 1개월 내 고성군 주소 이전 가능자
  - ③ (사업장)
    -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기업 및 3년 미만 기 창업기업
      - ※ 예비 창업기업은 2024. 12월 내 창업 완료 후 정산서 제출 시 창업 완료 서류(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) 제출
    - 소재지: 경상남도 고성군에 한함
  - ④ 기 창업자는 다른 사업장 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
    - ※ 예비 창업자는 창업 완료 후 다른 사업장 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
  - ⑤ 선정된 후 고성군 청년창업교육 등을 이수 할 수 있는 자

## ○ 지원내용

- 예비창업자: 창업준비·운영비·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15,000천 원 지원
- 기존창업자: 시제품제작·운영비·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15,000천 원 지원
- 공통사항: 창업교육반 운영, 창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※ 장비 구입 등 창업자의 자산취득성 집행은 불인정

## ○ 창업분야

- 지역 특산품 활용 분야, 신기술 관련 기회·개발·관리 분야
- 고성군 주력산업(문화·관광·수산 등)의 특산품 및 명소를 활용한 창업자 우선 지원
- 그 외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

## ○ 신청 제외대상
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 기재한 자(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)
- 공고일 기준 중앙부처, 중소기업청,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
- 사업자 대표 변경 등의 이유로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
-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

분 야	대상업종
금융부동산	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
유흥접객	무도장, 유흥접객영업(주점 등)
사행산업	베타업 등 사행산업
기타	기타 청년 창업지원 분야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

## 2. 접수방법

- 접수기간: 2024. 5. 3.(금) 09:00 ~ 5. 13.(월) 18:00
- 접수방법
  - 방문접수: 고성군청 본관 4층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
- 제출서류 ※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  -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 1부
  - 창업유지 및 참여 동의서 1부
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-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이동 포함) 1부
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(기 창업자, 예비창업자는 창업 완료 후 제출) 1부
  - 고용보험 가입내역서(기 창업자, 예비창업자는 창업 완료 후 제출) 1부

## 3. 선정 방법

- (선정방법) 사업계획을 공모·심사 후 선정
  - 사업계획의 성실성, 차별성 및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 - 심사위원 점수 합계 후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, 동점 시 고성군 거주 순으로 결정함

### ○ 추진일정

<b>모집공고</b> 2024. 5. 7.(화)~5. 13.(월)	⇒	<b>신청·접수/청년창업자선정 /보조금심의</b> 2024. 5. 31.(금) 限	⇒	<b>보조금 교육</b> 2024. 6. 14.(금) 限
<b>보조금 교부</b> 2024. 6. 28.(금) 限	⇒	<b>사업추진</b> 2024. 6.~12.	⇒	<b>사업비 정산</b> 2025. 1. 31.까지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선정 시 참고사항

- 고성군에서 제출 요청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출 및 협조의 의무가 있음(운영현황, 매출 등)
-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음
  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
  - 사업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주소 변경이 확인된 경우
-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 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
-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정당한 사유\* 없이 사업자 변경, 폐업할 경우 사업비 일부(보조금 30%) 환수

※ 영업부진,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: 증빙자료 본인 직접 제출

### ○ 문의처: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(☎055-670-2714)

## [참고 1]

### □ 지원 가능 항목

항목	내용 및 기준
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료구입비: 시제품(샘플)제작,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※ 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</li> <li>• 외주용역비(사용료) : 창업자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※ 카드결제(혹은 세금계산서 발행), 용역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</li> </ul>
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영을 위한 사무공간 임차비용</li> <li>• 장비 임차비용: 제품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</li> </ul>
교육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가 컨설팅, 기술·경영자문, 교육비, 지식 재산권 출원비 등</li> <li>• 사업 관련 전시·박람회 참관, 교육 등 참가 및 등록비</li> </ul>
사업홍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, 온오프라인 광고비,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등</li> <li>• 전시회(박람회) 참가 시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</li> </ul>
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소모품 등 ※ 식대, 자산 성격의 물품(사무기기 등) 구입 불가</li> </ul>

### ◇ 지원불가 항목

- 시설·장비 등의 자산 취득 비용
-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사무용품 등 비용
-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·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
- 리모델링비 등 임차료를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비용
- 공과금,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(전기, 수도, 인터넷, 보안 등)
- 현금성 캐쉬, 포인트, 상품권, 증권, 이체수수료 등 사업 활동과 무관한 현금지출
- 단순친목비, 주류비(술) 등

## [참고 2]

### 창업하면 고성스쿨! 서면심사 심사기준

평가 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배점 기준
총점		100	
사업계획의 성실성	- 목적, 대상,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	15	
창업아이템의 우수성	- 기능, 특징 등	20	
차별성 및 독창성	- 지역자원의 독창적 활용 및 상 업 트렌드 이해도	25	
시장성 및 판매전략	- 상권분석, 고객분석, 홍보 및 마 케팅 전략 등	20	
사업화 가능성	- 사업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-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	20	